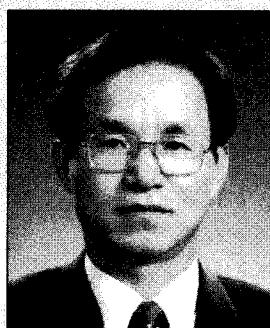


하도급법 시행의 성과와 향후 운용방향



유 철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국장

하도급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선진국의 하도급거래제도

현대 기업 활동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상호보완적 협조체계유지가 불가피하게 된다.

즉,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효율적인 생산분업방식으로 기업은 수평적·수직적분업활동을 도모하게 되는데, 수직적인 분업활동을 하도급거래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현실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의 존적 경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대기업과 정면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 성장에 대비한 기술개발과 설비, 인력투자 등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대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으로 작용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결국은 대기업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즉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보호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하도급

거래공정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공권력에 의해 방지하고 시정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행위지정고시를 82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고시 제59호로 고시하여 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위 고시 시행이후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신고가 대폭 증가되어 고시보다는 독립법률로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고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의 기본법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기존의 「독점규제공정화에관한법률」과는 별도로 84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여 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주요선진국의 경우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당사자간의 하도급거래를 체계적으로 직접 규율하는 제도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 1954년 3월에 공정취인위원회는 하청거래에 있어서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하청대금의 부당한 지불지연에 관한 인정기준』을 제정하여 독점금지법으로 규정하였으나,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간단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이 1956년 독점금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은 제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로 처벌하고 별도의 지침을 운용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하도급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원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다. 한편, 밀러법(The Miller Act C40.U.S.C 270a-270f)에서는 건설공사계약금액이 2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의 보증이 있거나 다른 법에서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대금지급보증을 발주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역시 하도급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으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와 하도급대금직불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여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하도급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으며 하도급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성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권장하고 있다.

하도급의 주요내용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거래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분쟁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며 소송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요약)

| 항 목 | 주 요 내 용 |
|------------------------------------|---|
| ○ 서면의 교부·보존 (제3조) | - 하도급거래 조건, 내용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서, 하도급대금 지급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함 |
| ○ 선금금 지급 (제16조) |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제9조) | -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양기간에 공정타당하게 정해야 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
| ○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13조) | -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60일 이내 어음으로 지급하되 어음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현행 연리12.5%)를 부담하여야 함 ·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60일 초과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범위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현행고시는 18%임)를 부담해야 함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13조의2) | -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시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교부받아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함 |
| ○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제16조) |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변동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에는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함 |

2. 원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요약)

| 항 목 | 주 요 내 용 |
|----------------------------|--|
|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4조) |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지급되는 대 가보다 “현저하게 낮은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아니 됨 |
|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5조) |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 ○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제8조) |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

| 항 목 | 주 요 내 용 |
|---------------------------|---|
| ○부당반품의 금지 (제10조) |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는 아니 됨 |
|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 금지(제11조) |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
|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의 금지(제17조)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18조) | -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 ○보복조치의 금지 (제19조) |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위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거래정지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탈법행위의 금지 (제20조) | - 하도급거래와 관련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개정 하도급법 · 시행령('97. 4. 1부터 시행)의 주요내용

개 정 배 경

중소기업보호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하도급 자문위원회 제도, 과징금부과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개선, 선금금 지급시 어음할인료 부과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1. 하도급법의 주요 개정내용

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및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제 신설

〈현황〉

원사업자는 목적물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파산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하도급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하도급계약체결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전

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통상 계약금액의 10%)를 제출케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부도시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에게 파산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행확보가 어려우며, 직불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대금의 직접지급을 발주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점〉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며, 특히 1개의 원사업자의 부도발생에 따라 30~50개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UR협정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에 외국 건설업체가 본격 진출하게 되는데 외국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서 국내 중소업자(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 내용〉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체결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였다.

나. 하도급자문위원회 제도 신설

하도급법의 경우 제조, 건설, 설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전문성의 확보가 대외적 신뢰성 확보 및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외부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하도급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과징금부과 제도 신설

하도급법 위반시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반으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요청, 형벌 등이 있으나 하도급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수단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대금미지급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라. 기타 법시행상 문제점 개선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개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 접수→협의회 조정의뢰→불성립시 위원회의 처리절차로 시 간지연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 지연이자율의 합리적 조정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연 25%)은 민·상법 상 법정이자율(연 5~6%)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지연이자율(18~24%)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위와 같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이 타법 또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어음할인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여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자율을 18%로 고시하여 97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3) 선금금지급시 어음할인료 부과 균형 마련

하도급법 제6조는 선금금 지급의무 및 선금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부과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균거로 부과하였으나 법의 균거가 미약하므로 현행 선금금지급조항에 어음할인료 부과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4) 지연이자 부과조항 명시

선금금,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부과조항을 두고 있으나 부당감액, 설계변경(물가연동분 포함)의 지연지급시 이자부과조항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동 대금의

지연지급시에도 지연이자 부과의 균거조항을 마련하였다.

(5) 기성금리제 명문화

현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계약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진척된 기성분에 대한 목적물의 검사, 인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인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성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균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목적물을 인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신·구 제도 주요내용 비교

| 항 목 | 종 전 | 개 정 |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제13조의2) | • 규정없음. 단, 수급사업자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금액 10%상당 계약 이행보증 시행중 (법적근거 없음)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토록 하는 제도 신설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상당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제도 신설 |
| •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25조의3) | • 시정명령, 영업정지요청, 형벌 등 | • 과징금제도 신설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등 금지조항위반에 대해 하도급거래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 • 중소기업간 하도급시 원사업자 결정 요건 (제2조제2항제2호) | •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로 결정 | • 연간 매출액기준으로 단일화 |
| • 제조위탁과 관련 지역별 차등적용근거 마련 (제2조제7항) | • 규정없음 | • 차등적용 물품 및 지역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신설(하도급법적용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배제) |
| • 준공금·기성금제도의 제조위탁 적용 (제13조제3) | • 건설위탁의 경우만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 •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적용 |
|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개선(제24조제2항)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 요청한 분쟁사건만 처리 | • 분쟁 당사자가 조정협의회에 직접 신고 가능 |
| • 하도급 자문위원회 제도 (제24조의2) | • 규정없음 | • 하도급거래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 제도 신설 |
| • 지역이자율 (제13조제5항) | • 대금미지급시 연25%의 지역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이자율을 고시토록 함 |

2.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97. 4. 1부터 시행)의 주요내용

가. 연간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에 대한 정의 (제1조의2 제1항)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연간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를 하도급계약시점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로 명확히 함과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경우 이에 대한 판단기준도 규정하였다.

나. 원사업자 제외기준 조정(제1조의2 제2항)

개정된 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기업간 하도급시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여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매출액(제조업 20억원, 건설업 30억원)으로 단일화하였다.

| 종류 | 기준 | 현행 | 개정 |
|-----|------|------|------|
| 제조업 | 매출액 | 20억원 | 20억원 |
| | 종업원수 | 20인 | 삭제 |
| 건설업 | 매출액 | 30억원 | 30억원 |
| | 종업원수 | 30인 | 삭제 |

다. 제조위탁시 지역별 적용범위(제1조의2 제2항)

개정된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물품과 지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레미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따라서 상기 지역에 소재하는 레미콘 제조업체(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라.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 (제3조의2)

개정된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 범위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원사업자가 건설공체조합에서 실시하는 재산상태등 평가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등급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였다.

마. 조사대상거래의 제한(제6조)

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가 종료된 날”을 건설위탁의 경우 「건설위탁한 당해 공사가 완공된 날」로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였다.

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처리사항 (제12조제1항, 제2항)

개정된 법 제24조제2항에서 당사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요청이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회에서 동일사건을 중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공정위에 통보도록 하였다.
고, 그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토록

신·구 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1) 연간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에 대한 정의 | 〈 내부지침으로 규정 〉 •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를 기준 | 〈 시행령으로 규정 〉 •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를 기준 - 아울러 신규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도 규정 |
| 2) 원사업자 제외기준 조정 | •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20억원(건설업 30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 20인(건설업 30인) 미만인 경우 원사업자에서 제외 | • 매출액(제조업 20억원, 건설업 30억원)으로 원사업자 제외기준 단일화 |
| 3) 제조위탁시 지역별 적용범위 | • 규정없음 | • 레미콘의 경우 -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한하여 하도급법 적용 |
| 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 면제에 대한 사항 | • 규정없음 | • 다음의 경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 -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미만 - 원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재산상태 등 평가시 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등급을 받은 경우 |
| 5) 조사대상거래 제한 | • 제조, 건설위탁 관계없이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거래가 종료된 날”로 규정 | • 건설위탁의 경우 ‘건설위탁한 당해 공사가 완공된 날’로 명확히 규정 |
| 6)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관련사항 | • 규정없음 | • 당사자도 직접 조정협의회에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회에 동일사건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협의회에서 처리토록 함 |
| 7) 자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 • 규정없음 | • 자문위원의 자격, 수당지급, 운영규정의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 |

하도급법의 운용성과와 문제점

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처리실적 및 평가

하도급법의 제정 시행(85. 4. 1) 이후 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정책』의 인식은 상당히 제고

되었고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도급법 자율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행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치유형별 시정 실적

(건수)

| 유형 | '83~'86 | '87~'90 | '91 | '92 | '93 | '94 | '95 |
|-------------------|---------|---------|-----|-----|-----|-----|-----|
| 고발 | 3 | 5 | 2 | 7 | 5 | 7 | 10 |
| 시정명령 (시정권고 포함) | 197 | 124 | 75 | 26 | 43 | 24 | 36 |
| 조정 | 56 | 159 | 52 | 50 | 90 | 84 | 113 |
| 경고 | 127 | 238 | 70 | 66 | 84 | 105 | 224 |
| 기각 및 기타 | 685 | 613 | 115 | 122 | 293 | 193 | 258 |
| 계 | 1,068 | 1,139 | 314 | 271 | 515 | 413 | 641 |

이를 법위반 행위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대금미지급, 어음할인료미지급, 선금금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법위반 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에서 정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95년도에 법위반 유형이 전년 수준보다 특히 증가한 것은 '95년도에 부실공사차원에서 불공정건설하도급 조사를 중점실시한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법위반 유형별 시정 실적

(건수)

| 유형 | '87~'90 | '91 | '92 | '93 | '94 | '95 |
|----------|---------|-----|-----|-----|-----|-------|
| 서면 미교부 | 85 | 66 | 35 | 52 | 132 | 219 |
| 대금 미지급 | 204 | 134 | 132 | 185 | 139 | 262 |
| 할인료 미지급 | 188 | 145 | 61 | 110 | 227 | 462 |
| 선금금 미지급 | 13 | 47 | 5 | 12 | 104 | 328 |
| 수령거부등 기타 | 172 | 68 | 79 | 78 | 102 | 88 |
| 계 | 662 | 460 | 312 | 437 | 704 | 1,359 |

* 1개 사건당 법위반유형이 충복될 수 있음.



2. 하도급법 운용에 따르는 문제점

가. 하도급법 적용의 한계

(1)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문제 등의 처리 불가

하도급신고사건의 조사결과, 당사자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손실보상문제는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없어 하도급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고 기타 기술적인 공사비정산문제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처리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이 아닌 별도

의 민사소송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고사건의 약 20%정도가 이러한 사유로 기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잠재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시정 곤란

하도급거래는 수직적 분업(또는 계열사)형태로서 대기업 의존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리한 거래조건이라도 감수하고 신고를 가급적 자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신고자의 신분과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

만, 수급사업자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단절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불이익당한 사례를 모두 신고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직도 당사자간의 하도급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장기여음교부, 부당감액 등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잠재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시·대규모 직권조사가 필요하나 이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많은 실정이다.

(3)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 미흡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등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함으로서 사건처리를 종결하게 된다. 이후부터의 당사자들간 채권·채무는 결국 민사로 돌아가 다룰 수 밖에 없게 된다.

나. 하도급관련 타법 운용의 문제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여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뿐만아니라 추가공사분 또는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여 주지 않으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

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정당하게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발주처의 신고과정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발주처가 저가심사를 회피함으로서 원사업자는 종종 발주처와의 계약단가의 88% 이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허위통지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후일 이를 근거로 당사자간에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일련의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당해 법규을 준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도 보호받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운용방향

기본 방향

정부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의 근절』을 중소기업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요정책과제로 추진중에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단기적으로 현행 법체두리내에서 법운용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 장기적으로 하도급거래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발생소지를 원칙적으로 봉쇄하여 나가는 것이다.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의 조기정착유도

법 개정시 신설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는 원

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미지급시 수급사업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하도급법 규정의 대부분이 사후규제 조항인 점에 비추어 사전적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97년 4월 1일 개정법률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동 제도의 실행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것이다.

2.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

하도급거래상 당사자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기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도록 권장·홍보하고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불완전하게 교부하는 경우 과징금부과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3. 하도급법의 실효성 확보

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다양화

법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뿐 아니라 공표명령, 과징금부과, 형벌부과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다.

나.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및 특별조사실시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심사기준을 마련, 엄격히 적용하여 입찰참가자

격제한요청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금번 법 개정시 신설된 과징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특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4. 교육·홍보 강화

하도급제도에 대하여 업종별, 지역별로 정기적인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는 한국공정경쟁협회 등을 통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법 개정에 맞추어 주요사항별로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5. 하도급 자문위원회의 적극 활용

하도급관련 전문인력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복잡·다양한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한 하도급법 운영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6. 기타 제도개선 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시책이외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사업자의 경우 선급금 및 물가연동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현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